

국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서울마곡나루우체국 1층 일부(제1종근린생활시설) 사용허가 입찰 공고

나. 대상재산

[단위 : m², 원, VAT포함]

재산의 위치	허가면적 (전용면적)	용도	예정가격	입찰집행(개찰)	
				장소	일시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5로 28 서울마곡나루우체국 1층	건물 106.39 (전용 83.91)	제1종근린 생활시설	69,520,000 (1년간 사용료, 매년 재산징)	서울지방우정청 집행관 PC	2024. 9. 23. 10:00

< 기타 사항 >

- 상기 예정가격 외 관리비, 공공요금, 화재보험료 등은 입찰 대상이 아니며, 낙찰가와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사용허가의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소매점, 휴게음식점, 사무실 외 다른 용도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 사용허가 면적에 대한 냉·난방기는 사용인이 별도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 사용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제반 인가, 허가, 등록 또는 승인의 취득은 사용인의 단독 책임으로 하며, 낙찰 후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 서울지방우정청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용인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보증금(이행보증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보증사유	보증금액
사용료 이행보증	사용료 분할납부의 경우	연간사용료의 50%
	사용료 일시선납(1년)의 경우	연간사용료의 25%
관리비 이행보증	관리비 납부 보증	연간관리비의 50%
원상회복 이행보증	시설물 공사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보증	총 공사비의 20%이상

※ **상기사항들의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도면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허가기간 :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5년 이내에서 1회 갱신 가능)

※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5조 및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1조2 제②항에 의하며, 사용허가 조건의 성실 이행과 서울지방우정청의 필요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라. 입찰서 제출 및 일정

- 입찰서 제출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
- 국유재산 사용계획서 제출기간 : 2024. 8. 29. 10:00 ~ 2024. 9. 20. 14:00
-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 : 2024. 8. 29. 10:00 ~ 2024. 9. 20. 16:00

마. 국유재산 사용계획서 제출 유의사항

1) 국유재산 사용계획서 제출은 방문 또는 팩스접수 가능(문의처: 02-6967-9223)

- 방문 장소 : 서울 종로구 종로6(서린동) 광화문우체국 9층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 FAX : 0505-005-1101

2) 국유재산 사용계획서 제출 및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전자입찰에 참여한 경우 무효로 처리됩니다.

3) 제출하신 국유재산 사용계획서가 사용목적(용도)에 적합한 지 심사 후 제출자에게 통보 (이메일, 유선 통보 등)합니다.

4) 제출서류 : 국유재산 사용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바. 입주 시기 : 낙찰일로부터 2개월 내외(협의 가능)

사. 대상재산의 상태

- 1) 현재 사용허가면적의 공간조성은 사용자의 인테리어 공사계획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해 진행됩니다.
- 2) 낙찰 후 사용인(낙찰자)의 필요에 의한 설비(냉난방설비 및 전력 등)는 사용인의 부담으로 별도설치 가능하며, 설치 시 상호 협의하여야 합니다.
- 3) 낙찰자의 영업을 위한 대상재산 내 출입구 신설 또는 확장, 간판 설치 등 인테리어 공사 관련 제반 사안은 서울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 한다.)과 낙찰자가 사전협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의 서면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 4) 사용허가면적의 공간조성 후 실제공간과 본 입찰공고에 기재 된(도면) 면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사용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조정사용료 = 낙찰금액의 m²당 사용료 × 최종사용면적

아. 사용목적(업종)의 제한

- 1) 혐오·기피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용도상 용도에 부합하고 건물과 입주자의 편익을 증진하며, 공서양속(公序良俗)을 저해하지 않는 업종
- 2) 우체국 영업 및 운영에 방해가 없고, 우체국 내 사용허가 받은 타 사용인과 업종의 중복이 없으며 우체국 및 건물의 안전·미화·보안상 문제가 없는 업종
- 3) 정부기관으로서의 우체국의 품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 및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업무 관련 임대 지양
- 4) 가맹사업체의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에 의거,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입찰 가능

2. 입찰방법

본 입찰은 일반경쟁 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한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이하 관련법령 검색은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참조)

가.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나. 국유재산법 제30조에 의한 관리와 목적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사용할 자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마. 입찰당시 국세,지방세 및 국유재산 사용료(관리비 포함)를 체납하지 아니한 자

- 체납한 자의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체납사실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는 입찰 참가자의 책

임으로 합니다.)

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자(2인 이상 공동입찰 금지)

사. 입찰인 유책사유로 우체국으로부터 제재 받은 사실 또는 계약해지 사실이 없는 자

아. 국유재산 사용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사전승낙을 받은 후 입찰 등록하시기 바라며, 사전 승낙 없이 입찰에 참여한 경우 무효로 처리됩니다["국유재산 사용계획서" 별첨].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연간사용료)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10(10%) 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 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신한은행", "우리은행" 또는 "하나은행"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이는 "신한위탁계정", "우리위탁계정" 또는 "하나위탁계정"입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입찰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 (분할 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할 때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보증금을 ①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거나, ②입찰보증금액 미만으로 입금한 경우, ③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한 때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사용허가 계약 체결시점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계약상 예정된 이행보증조치가 완료된 이후 낙찰자에게 반환됩니다.

6. 낙찰자의 결정방법

-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온비드”에서 낙찰자로 자동 결정합니다.
-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낙찰자의 제출서류

- 가.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다.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함) 각 1부
-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마.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우정청 양식 제공)
- 바. 각서 1부(우정청 양식 제공)
 - ※ 각서는 사용허가사항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기간 만료 및 취소시 원상복구 이행하며, 사용재산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전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사. 방화안전관리 및 국가시설물 보안을 위한 이행각서 각 1부(우정청 양식 제공)
- 아.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 1부(우정청 양식 제공)
- 자. 입찰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낙찰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차. 사용료 분납시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 납부 신청서(우정청 양식 제공)
- 카. 대리인 제출의 경우
 - 1) 위임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1부.(우정청 양식 제공, **사용인감 날인 불가**)
 - 2) 위임인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불가**)
 - 3) 대리인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법인을 대리할 경우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1부.
 - ※ ① 증명서류는 각 서류별 **유효한 기간을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유효 발급분이 아닌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② **서류 제출 시 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합니다.
- 나.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다. **서울지방우정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승낙(이메일, 유선통보 등)을 받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공매공고- 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합니다.

10.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 가.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사용허가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

고에 귀속되고 같은 법 제76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나. 낙찰자가 계약(국유재산 사용허가) 체결 후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며, 서울지방우정청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연간사용료(분할납부 시 1회차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사용료 분할 납부 시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제②항의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 다. 계약보증금 반환은 연간사용료(분할납부시 1회차 사용료) 납부가 확인되고, 사용료 분할납부 시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제②항의 관련 조치가 완료된 후 사용인의 요청에 의거 사용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단, 계약보증금 반환 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라.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 월 관리비는 국유재산 사용허가서상의 사용개시일과 낙찰자의 내부공사(시설물 설치 등) 시작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여 부과합니다.

11. 사용료 결정방법 및 납부 등

- 가. 경쟁 입찰에 의한 최초년도의 사용료는 **최고의 입찰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매년 선납**하여야 합니다.
- 다.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단, 50%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계약기간과 일치하게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연간사용료 분할납부 시 사용료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⑤항에 의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합니다.
 - ※ 분할납부 및 보증조치 등에 관하여는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2-6967-9223)에 문의
- 라.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며, 갱신하지 아니한 사용허가 기간 중으로 적용합니다.
 - ※ 입찰로 결정된 첫 해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감정평가금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감정평가금액)
- 마. 연간사용료는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조정**합니다.
- 바. 건물 손해(화재)보험은 서울지방우정청 산정기준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건물이 아닌 동산재산(집기류 등)에 대한 보험은 낙찰자가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사. 관리비(청소용역비,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금, 도로점용료, 기타제비용 등)는 고정성 경비와 실비성 경비로 서울지방우정청 또는 우체국에서 산정한 산정기준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 낙찰자는 사용허가 후 관리비(공과금 등)를 지정기일 내 납부하여야 하며,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계약기간과 일치하게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 예정가격(사용료)이 산출오류 등으로 부족 징수되었을 때에는 추가고지 가능합니다.

12. 허가 · 취소 · 철회 등

가. 허가권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 1) 국유재산법제32조제2항(사용료 납부)의 규정을 위반한 때
- 2) 당해 재산의 관리를 해태하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반한 때
- 3)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허가를 받을 때
- 4) 당해 국유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때
- 5) 승인 없이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때
- 6) 국민 일반정서에 부합되지 않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영업행위의 용도로 사용한 때
- 7)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의무사항(사용료 납부, 보험가입, 관리비 납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8) 상기 조건 이외에 서울지방우정청 또는 우체국 승인없이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을 변경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때

나. 허가권자는 사용허가 한 행정재산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조건 이외에 서울지방우정청에서 정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서의 허가조건을 추가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습니다.

라. 사용인의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허가취소로 사용인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 우체국 또는 서울지방우정청에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 설치 가능한 시설물 범위 및 각서 제출 등

가. 국유재산법 제18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간판 및 실내·외 홍보물 설치**는 **서울지방우정청 또는 우체국과 별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외부 사 인물은 임차인이 우체국 사전 협의 후 구청으로부터 허가받아 설치)

나. 기존 설치된 시설물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서울지방우정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사용인(낙찰자)은 사용허가 취소 또는 철회 시 사용인(낙찰자)이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인(낙찰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정한 가설 건축물로서, 그 존치기간이 임대기간 이내인 것.
- 2) 기타 가설물의 경우는 해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시설물 철거비용이 축조비용의 1/2을 초과)이 소요되지 않아 철거 등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물
 - a.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b.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는 시설물
 - c. 주거용 시설물
 - d. 설치 시 토지환경을 침해하거나 토지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물

라. 현 상태 이외의 가설물 설치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청사관리부서(우체국)의 사전승인 후 사용인 책임 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시설물 설치 시 사용인은 해당 시설물의 투자예상액(공무원가계산서상의 총공사비)의 20% 이상을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서울지방우정청장을 수령인으로 한 이행(지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입기간 : **공사개시예정일 ~ 사용허가기간 만료일+14**)

- 바. 서울지방우정청에서 가설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이 필요치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또는 계약 해지 시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공증각서를 계약 체결 시 또는 시설물 설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였으므로 **입찰참가신청자는 반드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재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서울지방우정청에서 정한 사용허가조건,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사용허가 관련규정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서울지방우정청에서는 이를 소홀히 한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동 권리를 양도·전대할 수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든 서울지방우정청 및 제 3자에게 권리금, 영업비, 유익비, 필요비 등을 청구·주장 할 수 없습니다.**
- 다. **사용인의 사용허가재산 점유, 사용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제반 인가, 허가, 등록 또는 승인의 취득은 사용인의 단독 책임으로 합니다.**
- 라. 입찰 대상재산 내에서 영업·사용 행위를 위한 설비공사와 내부인테리어공사 등 일체의 공사는 서울지방우정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인(낙찰자)의 책임 하에 시행합니다. 단, 내부인테리어공사 시 건물 내·외부의 미관과 인근 마감재의 종류 및 색상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서울지방우정청은 사용인(낙찰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인(낙찰자)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 마. 해당 재산의 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용도지역지구 및 제한사항 등)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물의 보수, 도색 등의 조치없이 현 상태로 사용허가 할 예정이니 반드시 동 내용을 유념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필요 시 화장실은 별도 협의)
- 바. 본 입찰의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사.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 아.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사용허가(계약) 체결 시 사용허가서와 별도로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칙 또는 특약사항을 붙일 수 있습니다.
- 차. 본 입찰 **대상재산 내에서의 운영(영업·사용 행위)시간은 우체국 운영시간과 동일**하며 제한 시간 내 **운영시간의 변경은 우체국 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 카. 해당 **재산 특성상 주차구역 협소로 주차장 이용은 불가하므로 이점 참고 후 입찰 진행** 바랍니다.

15. 기타

가. 입찰 및 계약 관련문의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 전화번호 : (☎) 02-6967-9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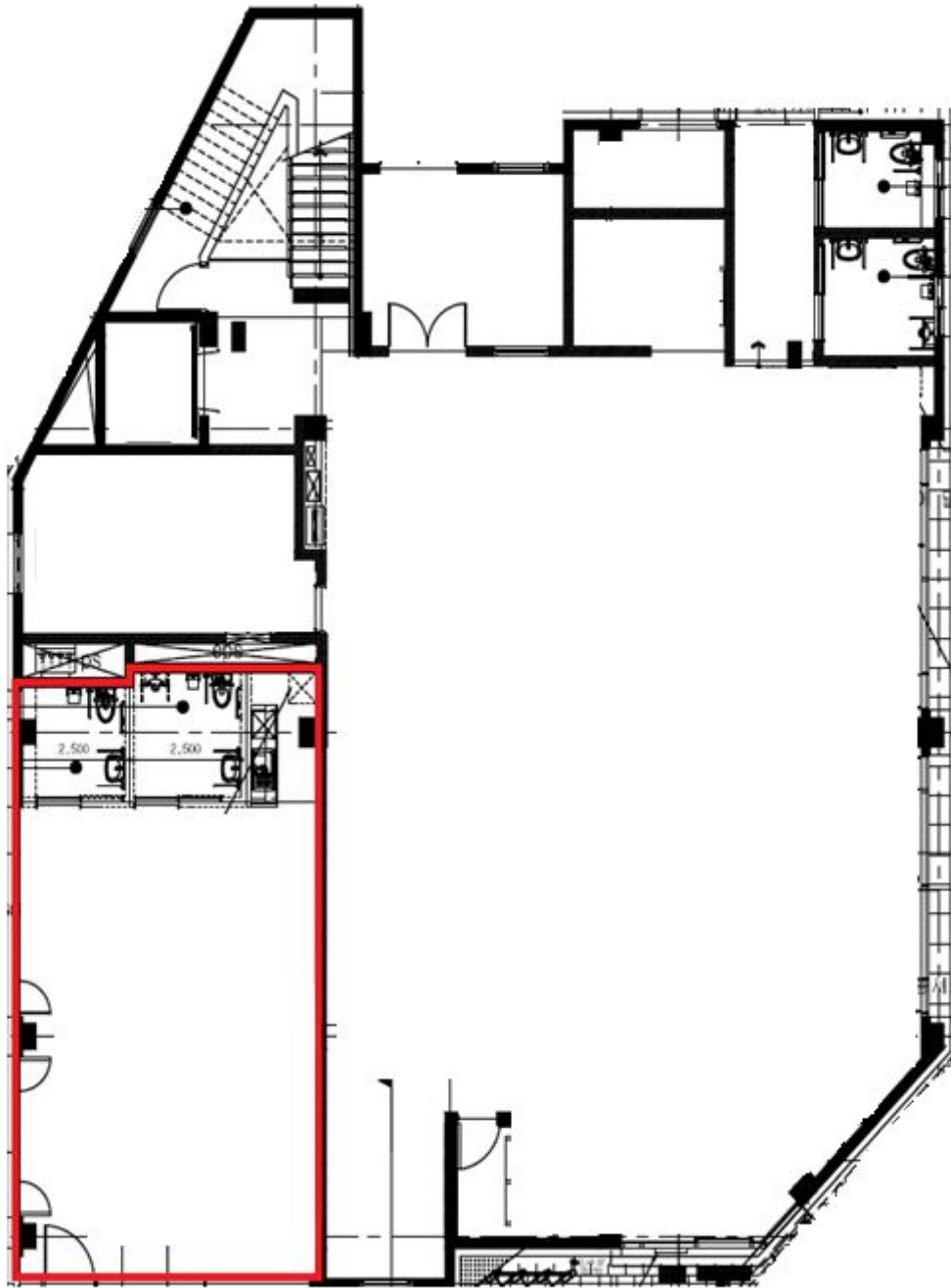
나. 건물 관련 문의

-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48, 강서우체국 지원과
- 전화번호 : (☎) 02-2660-8973
-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 라. 입찰에 관한 집행사항 : <http://www.onbid.co.kr>
- 입찰서 제출 여부 및 입찰 결과 :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2024년 8월 28일

서울지방우정청 분임재산관리관

붙임 1. 국유재산 사용재산 도면



※ 상세 도면은 낙찰자가 국가시설물 보안을 위한 이행각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제공됩니다.

붙임 2. 국유재산 사용계획서 양식

국유재산 사용계획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연락처	담당자	성 명		직 급		
			주 소					
	(주민[법인]번호)		전 화					
			이 메 일					
사용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상주인원				
사업내용				기타사항				
운영경력								
운영계획	대상재산	서울__우체국	소재지	서울 __구 __동				
		지상 층	사용면적	전용면적 (㎡)		계약면적 (㎡)		
	사용기간	년	사용개시	20 년 월 일				
	인테리어 공사기간	20 년 월 일부터 약 일 소요 예상						
	시 설 투 자 계 획	시설물 투자예상액(인테리어 총 공사비용) 기재						
	운영시간	구 분	월요일 ~ 금요일	토요일		일 · 공휴일		
개 장								
폐 장								
기타 요청사항								
<p>주) 1. 기재할 면이 적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2. 국유재산 사용계획서에 대한 승낙 사항은 운영업종과 사용허가 대상재산에 한함.</p> <p style="text-align: center;">위의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서울지방우정청 분임재산관리관 귀하</p>								

붙임 2. 위임장

위 임 장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위임인과의 관계	
<p>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위임사항에 대해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p>		
위 임 사 항		
<p>1. 입찰관련 업무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2. 사용허가 체결에 필요한 제반사항</p>		
위 임 인	성 명	(인) 「인감도장」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 붙임 1. 위임인 인감증명서 1부.
2. 대리인 신분증(또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1부.